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환 경 영 향 평 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2015. 05

[주]삼진씨앤씨

## 제1장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개요

### 1.1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포항 지역의 개방화와 세계화를 촉진하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며,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식창조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항지구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면적 : 3,756,640㎡) 되었으나, 현재의 개발여건, 산업구조의 변화, 수요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개발계획으로 축소·변경(면적 : 1,404,058㎡)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 1.2 사업 개요

- 사업명 :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 사업의 종류 :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1,404,058㎡ (산업시설용지 514,322㎡)]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 사업시행자 : ㈜삼진씨앤씨
- 사업비 : 약 336,263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7년)
- 개발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3 및 제9조에 의한 민간개발
- 승인권자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개발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사업지구 면적	1,404,058	100.0
산업시설용지	514,322	36.6
상업업무시설용지	129,073	9.2
주택건설용지	228,650	16.3
공공시설용지	532,013	37.9

□ 유치업종

구 분	유치업종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li> <li>• (C24)1차금속제조업</li> <li>•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li> <li>•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li> <li>•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li> <li>•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10)식품 제조업</li> <li>•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li> <li>•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에 한함)</li> </ul> <table border="1" data-bbox="427 705 1385 1048"> <tr> <td>2221</td> <td>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td> <td>22231</td> <td>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td> </tr> <tr> <td>22211</td> <td>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td> <td>22232</td> <td>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td> </tr> <tr> <td>22212</td> <td>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td> <td>2224</td> <td>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td> </tr> <tr> <td>22213</td> <td>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td> <td>22240</td> <td>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td> </tr> <tr> <td>2222</td> <td>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td> <td>2225</td> <td>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td> </tr> <tr> <td>22221</td> <td>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td> <td>22250</td> <td>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td> </tr> <tr> <td>22222</td> <td>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td> <td>2229</td> <td>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td> </tr> <tr> <td>22223</td> <td>플라스틱 창호 제조업</td> <td>22291</td> <td>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td> </tr> <tr> <td>22229</td> <td>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td> <td>22299</td> <td>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td> </tr> <tr> <td>2223</td> <td>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td> <td></td> <td></td> </tr> </table>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산업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li> </ul>																																							
그린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1에 한함)</li> </ul> <table border="1" data-bbox="434 1164 1385 1478"> <tr> <td>2011</td> <td>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td> </tr> <tr> <td>20111</td> <td>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td> </tr> <tr> <td>20112</td> <td>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td> </tr> <tr> <td>20119</td> <td>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td> </tr> <tr> <td>2012</td> <td>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td> </tr> <tr> <td>20121</td> <td>산업용 가스 제조업</td> </tr> <tr> <td>20129</td> <td>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td> </tr> <tr> <td>2013</td> <td>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td> </tr> <tr> <td>20131</td> <td>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td> </tr> <tr> <td>20132</td> <td>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td> </tr> </table>	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지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28)전기장비 제조업</li> <li>•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li> <li>• (J58)출판업</li> <li>• (J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li> <li>•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li> <li>• (J63)정보서비스업</li> <li>• (M70)연구개발업</li> <li>• (P85)교육 서비스업</li> <li>• (Q86)보건업</li> <li>• (U99)국제 및 외국기관</li> </ul>																																							

### 1.3 추진경위 및 계획

- 2008. 02 : 대구·경북지식경제자유구역 포항지구 추가지정을 위한 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 2008. 04 : 지식창조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포항기술융합산업지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환경부)
- 2008. 05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지경부고시 제2008-36호)
- 2009. 02 : 시행자 지정 (LH, 경자청 고시 제2009-2호)
- 2011. 05 : 사업시행자 변경 요청 (LH→경자청, 포항시, 경상북도)
- 2014. 07 : 사업시행자 변경(LH→(주)삼진씨앤씨, 경자청고시 제2014-19호)
- 2015. 02 :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주)삼진씨앤씨→경자청)
- 2015. 02. 17~03. 02 : 주민의견청취(14일간)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15. 03 :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대경 경자청 → 산업부 기획단)
- 2015. 03. 20~27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서면자문)
- 2015. 04 :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협의기관 접수
- 2015. 05 : 전략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협의 완료(환경부)
- 2015. 05 :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정·고시(변경) 및 실시계획 추진
- 2015. 0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2015. 06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15. 07 :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요청 (대구지방환경청)
- 2015. 07~ 08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08 :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015. 09 :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요청(대구지방환경청)
- 2015. 10 : 대구지방환경청 협의완료

## 1.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포항 용합기술산업지구의 면적은 1,404,058㎡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2항(별표3)」에 따라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중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 포항용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면적은 15만㎡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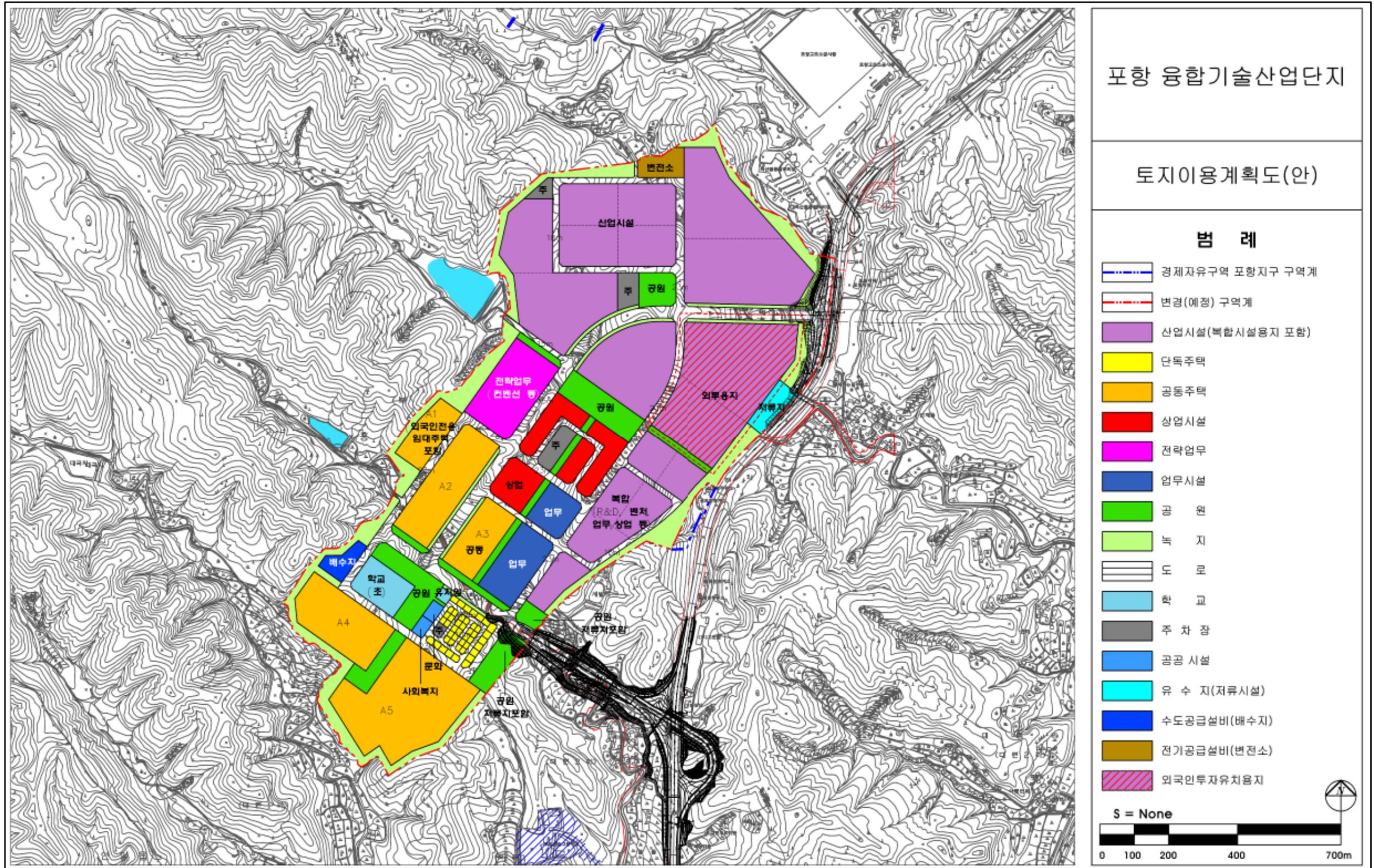
[표 1.4-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 규모	협의요청시기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p>▶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상사업면적 범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p>▶ 포항 용합기술산업지구 산업시설용지 : 514,322㎡(산업용지 : 435,903㎡, 복합용지 78,419㎡)</p>		

## 1.5 사업의 주요 내용

###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04,058	100.0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514,322	36.6	
	산업용지	435,903	31.0	
	복합용지	78,419	5.6	• 산업, 연구(R&D), 벤처, 상업, 업무 등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129,073	9.2	
	일반상업	48,170	3.4	
	전략업무	40,144	2.9	• 컨벤션센터 등
	업 무	40,759	2.9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28,650	16.3	
	단독주택	15,580	1.1	
	공동주택	213,070	15.2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32,013	37.9	
	공 원	103,559	7.4	
	녹 지	155,665	11.1	
	수도공급설비	7,291	0.5	• 배수지
	전기공급설비	9,487	0.7	• 변전소
	학 교	18,830	1.3	• 유치원 1개소(1,330㎡) • 초등학교 1개소(17,500㎡)
	공공지원시설	4,197	0.3	• 문화시설(2,094㎡) • 사회복지(2,103㎡)
	유수지	9,502	0.7	• 저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	
	도 로	206,140	14.7	
	주차장	17,342	1.2	• 4개소



[그림 1.5-1] 토지이용계획도

## 나. 세부시설 계획

### 1) 산업유치계획

구 분		면적(㎡)
합 계		643,395
산업 시설 용지	소계	514,322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354,527
	융합산업복합플렉스	684,840
	바이오·의료	40,688
	융합기술복합플렉스(R&D)	390,390
상업·업무시설용지 (전략업무, 업무, 상업)		102,924

### 2) 기반시설계획

#### 가) 교통시설계획

##### (1) 도로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계			18	8,636	206,140	
대로	소계		3	2,386	85,812	
	1류	35이상~40m미만	3	2,386	85,812	
	2류	30이상~35m미만	-	-	-	
	3류	25이상~30m미만	-	-	-	
중로	소계		10	5,872	116,574	
	1류	20이상~25m미만	4	3,015	70,581	
	2류	15이상~20m미만	5	2,470	41,291	
	3류	12이상~15m미만	1	387	4,702	
소로	소계		5	378	3,754	
	1류	10이상~12m미만	3	304	3,142	
	2류	8이상~10m미만	2	74	612	
	3류	8m미만	-	-	-	

## (2) 주차장

구분	개소수	면적(m <sup>2</sup> )	비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4	17,342	· 노외주차장

## 나) 공간시설계획

## (1) 공원

구분	개소수	면적(m <sup>2</sup> )	비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4	103,559	

## (2) 녹지

구분	개소수	면적(m <sup>2</sup> )	비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3	155,665	· 완충녹지

## 다)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 (1) 수도공급설비

구분	개소수	면적(m <sup>2</sup> )	비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7,291	· 배수지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

## (1) 학교

구분	개소수	면적(m <sup>2</sup> )	비고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	소계	2	18,830
	유치원	1	1,330
	초등학교	1	17,500

## (2) 문화시설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2,094	

## (3) 사회복지시설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2,103	

## 마) 방재시설 계획

## (1) 유수지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9,502	· 저류시설

## 3)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계획인구(변경) : 11,600(인)

○ 계획호수(변경) : 4,270(세대)

구분	계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총면적(㎡)	1,404,058	-	-
주거용지(㎡)	228,650	15,580	213,070
세대(호)	4,270	70	4,200
인구(인)	11,600	200	11,400
인구밀도(인/ha)	83	128	535

## 4) 공급처리계획

### 가) 용수 공급계획

- 생활용수는 6,288m<sup>3</sup>/일로 이 중 산업지역 수요량은 395m<sup>3</sup>/일이며, 주거지역 수요량은 5,893 m<sup>3</sup>/일로 추정되었다.
- 본 단지에 사용할 용수 중 공업용수는 2,539m<sup>3</sup>/일로 추정되었다.
- 본 단지 총 용수 수요량은 8,827m<sup>3</sup>/일로 추정되었다.

#### [생활용수량]

구 분		인 구 (인)	일최대급수 원단위(ℓ)	일최대 급수량 (m <sup>3</sup> /일)	시간최대 급수량 (m <sup>3</sup> /일)	비고
주거 용지	단독주택	200	508	102	153	
	공동주택	11,400	508	5,791	8,687	
	소 계	11,600		5,893	8,840	
산업 용지	상근인구	2,544	80	204	306	
	이용인구	6,361	30	191	287	
	소 계	8,905		395	593	
총 계		20,505		6,288	9,433	

#### [공업용수량]

구 분		급수면적 (m <sup>2</sup> )	원단위 (m <sup>3</sup> /천m <sup>2</sup> /일)	일최대 급수량 (m <sup>3</sup> /일)	시간최대 급수량 (m <sup>3</sup> /일)	비고
메카트로 닉스 및 부품소재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9,088	1.09	64	96	
	1차금속제조업	59,088	1.44	85	128	
	금속가공제품제조업	59,088	4.81	284	42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59,088	16.08	950	1,425	
	기타기계 및 장비	59,088	6.07	359	539	
	기타운송장비	59,087	3.32	196	294	
	소계	354,527		1,938	2,908	
바이오 의료	식품제조업	10,172	4.01	41	62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10,172	1.67	17	2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0,172	4.24	43	6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0,172	11.19	114	171	
	소계	40,688		215	324	

구 분		급수면적 (㎡)	원단위 (㎡/천㎡/일)	일최대 급수량 (㎡/일)	시간최대 급수량 (㎡/일)	비고
그린 에너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3,563	1.67	23	35	
	전기장비제조업	13,563	6.13	83	1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562	4.73	64	96	
	소계	40,688		170	256	
지식 서비스	출판업	9,802	2.80	27	41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9,802	2.80	27	4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802	2.80	27	41	
	정비서비스업	9,802	2.80	27	41	
	연구개발업	9,802	2.80	27	41	
	교육서비스업	9,803	2.80	27	41	
	보건업	9,803	2.80	27	41	
	국제 및 외국기관	9,803	2.80	27	41	
	소계	78,419		216	287	
총 계		514,322		2,539	3,775	

주1] 환경부, 국토해양부, 2014- 업종별 부지면적 원단위사용,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 편람」

주2] 지식서비스산업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원단위 추정 산출값을 사용하였음

## 나) 오·폐수 처리계획

- 본 단지 총 발생 오폐수량은 6,525㎡/일로 산정되었다.

### [오수발생량]

구 분		일최대 급수량 (㎡/일)	오 수 전환율 (%)	유수율 (%)	일최대 오수량 (㎡/일)	지하수량 (%)	계획1일 일최대 오수량 (㎡/일)	계획1일 시간최대 오수량 (㎡/일)	비고
주거 용지	단독주택	102	90	78	72	10	79	115	
	공동주택	5,791			4,065		4,472	6,505	
	소 계	5,893			4,137		4,551	6,620	
산업 용지	상근인구	204			143		157	229	
	이용인구	191			134		147	214	
	소 계	395			277		304	443	
총 계		6,288			4,414		4,855	7,063	

## [폐수발생량]

구 분		일최대 급수량 (m <sup>3</sup> /일)	폐수 화율 (%)	일최대 폐수량 (m <sup>3</sup> /일)	지하 수량 (%)	1일 일최대 폐수량 (m <sup>3</sup> /일)	1일 시간최대 폐수량 (m <sup>3</sup> /일)	비고
메카트 로닉스 및 부품소 재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4	35.4	23	2	25	36	
	1차금속제조업	85	24.0	20	2	22	33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84	64.8	184	18	202	29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50	86.8	825	83	907	1,319	
	기타기계 및 장비	359	0.7	3	0	3	4	
	기타운송장비	196	61.4	120	12	132	193	
	소계	1,938		1,175	117	1,292	1,879	
바이오 의료	식품제조업	41	65.9	27	3	30	4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17	65.0	11	1	12	1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43	57.4	25	2	27	3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14	0.7	1	0	1	1	
	소계	215		64	6	70	102	
그린 에너지	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3	17.5	4	0	4	6	
	전기장비제조업	83	66.4	55	6	61	8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4	61.4	39	4	43	63	
	소계	170		98	10	108	157	
지식 서비스	출판업	27	84.0	23	2	25	36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27	84.0	23	2	25	3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84.0	23	2	25	36	
	정비서비스업	27	84.0	23	2	25	36	
	연구개발업	27	84.0	23	2	25	36	
	교육 서비스업	27	84.0	23	2	25	36	
	보건업	27	84.0	23	2	25	36	
	국제 및 외국기관	27	84.0	23	2	25	36	
	소계	216		181	18	200	290	
총 계		2,539		1,518	152	1,670	2,429	

### 다)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 최대전력수요는 75,106kW로 추정되며 산업용지가 28,810kW, 복합용지 및 상업업무, 주거 등이 46,296kW이다.

#### [산업용지 최대전력수요]

구 분	부지면적 (㎡)	전력 원단위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가동시간 (hr)	부하율 (%)	개별최대부하 (kW)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354,527	411	145,711	7,464	60.2	32,428
바이오.의료	40,688	300	12,206	7,271	60.6	2,770
그린에너지	40,688	427	17,374	7,288	64.5	3,696
합계	435,903	-	175,291	-	-	38,894
총 최 대 부 하(kW)	38,894kW ÷ 1.35(부등률)					28,810

#### [복합용지 및 상업업무용지, 주거시설 등 최대전력수요]

건 물 용 도	연면적(㎡), 규모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복합용지	196,048	190	37,249	60	22,349	
일반상업용지	240,850	160	38,536	50	19,268	
전략업무용지	80,288	140	11,240	50	5,620	
업무용지	163,036	140	22,825	50	11,413	
단독주택	23,370	30	701	35	245	
공동주택	60㎡이하	1,615세대	3,000VA/세대	4,845	35	1,696
	60~85㎡	2,205세대	4,500VA/세대	6,615	35	2,315
	85㎡이상	380세대	6,000VA/세대	1,140	35	399
	동력부하	427,963	-	5,403	40	2,161
	부대시설	21,308	-	492	-	246
	소계	4,200세대	-	18,494	-	6,817
공공지원시설	8,394	140	1,175	50	588	
학교	18,830	60	200	50	100	
전기공급설비	2,846		333		167	
도로, 주차장	223,482	1.25	279	100	279	
공 원	103,559	0.25	26	100	26	
합 계	-	-	131,059	-	66,872	
변 압 기 용 량	66,872kVA / 1.30(부등률) = 51,440kVA					
최 대 부 하	51,440kVA × 0.9(역률) = 46,296kW					

## 라) 에너지 사용 계획

- 총 연료사용량은 49,765천Nm<sup>3</sup>/년이다.

구 분	열수요 (Gcal/년)	LNG사용량 (천Nm <sup>3</sup> /년)	비 고
산업용지	383,044	36,725	열수요(Gcal/년)/(10,430kcal/Nm <sup>3</sup> )
복합용지,상업업무, 주거 등	96,566	11,573	열수요(Gcal/년)/(10,430kcal/Nm <sup>3</sup> x0.8)
취사용	15,281	1,465	열수요(Gcal/년)/(10,430kcal/Nm <sup>3</sup> )
합 계	494,891	49,765	-

## 마) 통신계획

- 사업지구 통신수요량은 31,757회선이며 여유율 20%를 감안할 경우 38,108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 분	연면적, 규모(m <sup>2</sup> )	회선 기준	회선수	비고
메카트로닉스 및 부품소재	354,527	1회선/100m <sup>2</sup>	3,545	
바이오.의료	40,688	1회선/100m <sup>2</sup>	407	
그린에너지	40,688	1회선/100m <sup>2</sup>	407	
복합용지	196,048	3회선/100m <sup>2</sup>	5,881	
일반상업용지	240,850	3회선/100m <sup>2</sup>	7,226	
전략업무용지	80,288	3회선/100m <sup>2</sup>	2,409	
업무용지	163,036	3회선/100m <sup>2</sup>	4,891	
단독주택	70세대	1.5회선/세대	105	
공동주택	4,200세대	1.5회선/세대	6,300	
공공지원시설	8,394	2회선/100m <sup>2</sup>	168	
학 교	18,830	2회선/100m <sup>2</sup>	377	
공중전화	20,505	1회선/500인	41	
합계	-	-	31,757	20% 여유율 적용시 약 38,108

## 제2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2.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선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환경영향예측 및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환경현황 조사항목을 토대로 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추출하되, 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를 추출하였다.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의 예측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 사용 및 공사시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단기적인 환경요소를 추출하였다.

#### [환경영향요소 추출]

공 사 시		운 영 시
부지조성	시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의 변화 및 절·성토</li> <li>○ 강우시 토사유출</li> <li>○ 공사시 폐기물 발생</li> <li>○ 공사 장비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공사</li> <li>○ 포장공사</li> <li>○ 건축물공사</li> <li>○ 자재운반</li> <li>○ 조경식재</li> <li>○ 공사인부 및 장비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가스</li> <li>○ 도로이용</li> <li>○ 폐기물 악취발생</li> <li>○ 시설물 가동에 따른 배출가스</li> </ul>

####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흐름도]





## 2.3 평가항목 선정

### 가. 중점검토항목 선정

- 중점평가 항목의 설정은 사업계획, 지역특성, 환경영향요소, “환경부고시 제2011-161호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 [중점검토항목 선정]

구분	항목수	평가항목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제환경 분야
중점평가항목	16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양 지형·지질 토지이용	동·식물상	소음·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일조강해 전파강해	인구
현황조사항목	2	기상	-	-	자연환경자산	-	-

#### [평가항목의 선정사유]

구분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평가항목 (16개)	대 기 질	-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사운반에 의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통행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 취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에 따른 악취 발생
	온실가스	- 공사시 장비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운영시 산업시설, 지원시설 연료사용, 전력사용 및 차량이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수 질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수리·수문	- 공사시 지형변화에 따른 토사유출 및 홍수 발생
	토 양	- 공사시 건설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으로 토양오염 발생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 및 산업폐기물에 따른 토양오염 발생
	지형·지질	-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및 토공발생 - 공사시 나대지 발생에 따른 토사유출 및 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면발생
	토지이용	- 사업시행 전·후 토지이용변화 발생 - 상위계획 및 주변환경 고려
	동·식물상	- 지형변화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 발생

구 분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 운영시 산업시설 가동 및 통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폐유 및 생활폐기물 발생 - 운영시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
	위락·경관	- 산업시설 및 택지조성으로 인한 경관적 악영향 발생
	위생·공중보건	-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강 유해물질 발생
	일조장해	-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의 일조장해 예상
	전파장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는 미미함
	인 구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및 주거현황 파악
현황 조사 항목 (2개)	기 상	- 사업시행에 따른 기상변화는 미약하나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자연환경 자 산	- 사업구역 내 자연환경자산 포함여부 파악
제외 항목 (2개)	주거 및 산업	- 본 사업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음
	해양환경	-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아님



[환영영향평가시 현황 측정지점(예정도)]

## [환경영향평가시 측정지점]

구분	측정지점	비고
A (대기)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781	A-1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74	A-2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607	A-3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109(학천초등학교)	A-4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580	A-5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858	A-6
N·V (소음·진동)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781	N·V-1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74	N·V-2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607	N·V-3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109(학천초등학교)	N·V-4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580	N·V-5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858	N·V-6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614-1(포항예술고등학교)	N·V-7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9-3(동해안휴게소)	N·V-8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533(어린이집)	N·V-9
W (수질)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901(소류지)	W-1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808-2(이인저수지)	W-2
	▶ 이인저수지 하류부 약 m지점	W-3
	▶ 이인교 지점(초곡천)	W-4
	▶ 총곡교 지점(초곡천)	W-5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781	GW-1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74	GW-2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607	GW-3
S (토양)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974	S-1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783	S-2
O (약취)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781	O-1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607	O-2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109(학천초등학교)	O-3

## [환경영향평가시 환경현황조사(환경질 및 자연생태 분야)]

항목		조사항목	지점
환경질 분야	(1)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세먼지(PM-10), 황산화물(SO<sub>2</sub>), 질소산화물(NO<sub>2</sub>), 일산화탄소(CO), 오존(O<sub>3</sub>), 납(Pb), 벤젠</li> </ul>	6개소
	(2)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수 ⇒ 수온, pH, BOD, SS, DO, 대장균, Cd, Pb, As, CN, Hg, ABS, Cr<sup>6+</sup>, PCB, 유기인</li> <li>지하수 ⇒ pH,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KMnO<sub>4</sub>소비량, NH<sub>3</sub>-N, NO<sub>3</sub>-N, Cl, Cd, As, Pb, Cr<sup>6+</sup>, CN, Hg, 유기인, 페놀, TCE, PCE, 경도, 탁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수 : 5개소</li> <li>지하수 : 3개소</li> </ul>
		(3)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음(주간 4회, 야간 2회)</li> <li>진동(주간 2회, 야간 1회)</li> </ul>
	(4) 약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합약취</li> </ul>	3개소
	(5)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H, Cd, Cu, As, Hg, Pb, Cr<sup>6+</sup>, Ni, Zn, F, BETX, TPH, CN, 페놀, PCB, 유기인</li> </ul>	2개소
동·식물상 분야	(1) 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기념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종, 특정군락 등</li> <li>보호수 및 노거수 분포현황</li> <li>식생분포현황 및 식생구조</li> <li>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조사지역 및 주변지역)</li> <li>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li> <li>생태자연도</li> </ul>	
	(2) 동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li> <li>육수동물상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li> <li>천연기념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종</li> </ul>	

※ 환경질 측정 주기 : 3계절 조사(진행중) / 대기질 : 3일연속 측정  
자연생태 조사주기 : 3계절 조사(진행중)

## 나. 평가방법

- 평가항목마다 본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리하고, 환경영향을 회피 또는 저감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제3장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개, 본 사업의 승인 기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 나.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포항시 홈페이지,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청 홈페이지, 전국 및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발행되는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이다.

####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포항시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홈페이지에 공고시 환경부의 초안 열람 사이트를 연계하여 온라인상으로 20일 이상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내 초안공람 사이트 :  
<http://eiass.go.kr>
- 포항시 흥해읍사무소에서 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람장소는 포항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공람장소에 주민의견제출서를 비치하여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토록 유도할 것이다.

### 다.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초안 공람 기간 중 1회 실시하며, 설명회 장소는 포항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 주민설명회 당일 별도의 주민의견제출서 양식을 비치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한다.
-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민들의 별도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기로 한다.

#### □ 기타 사항

- 주민설명회 안내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마을 방송, 이장을 통한 개별 공지 등의 추가적인 홍보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결과

###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개최

- 주관행정기관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16층, 대회의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일 : 2015. 05. 07(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 11명(위원장 포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석인원 : 11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계		11명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개발2부장	박재민	당연직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권영창	환경분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조공장	환경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권용일	도시계획
영남대학교	교수	사공준	공중보건
포항시	투자유치담당관	정연대	행정분야
	복지환경위생과장	노연정	환경분야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백강훈	주민대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병억	환경분야
경제자유구역청	민원2과장	서만교	환경분야
	지식산업지구개발팀장	박무조	토목분야





##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 및 심의내용

### 4.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

□ 심의 결과 : 가결(조건부)

○ 의견제출 : 8명

- 가결(조건부) : 8명

※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

소속 및 직위	성 명	심의 의견	비고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권영창	가결(조건부)	대임희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조공장	가결(조건부)	
대구한인대 교수	권용일	가결(조건부)	
영남대학교 교수	사공준	가결(조건부)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백강훈	가결(조건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병억	가결(조건부)	
포항시 투자유치담당관	정연대	가결(조건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민원2과장	서만교	가결(조건부)	
종합의견	가결(조건부)	원안 가결	0명
		가결(조건부)	8명
		재 심 의	0명

### 4.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구분	심의의견	반영여부
<b>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b>		
대구지방환경청 권영창 위원	○ 수질·수리·수문은 사업지 인접수계에 막연히 설정하지 말고 사업경계로부터 1km를 잡아놓고 그 영향권에 있는 하천, 저수지에 대하여 조사	○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시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대기질은 1.5km를 영향권으로 잡았는데, 지도를 검토해보니 2km 범위 내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성곡지구, 신평항역이 있어 2km로 범위를 넓혀 설정	○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시 대기질의 영향범위는 2km로 확대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대기질, 악취, 공중위생·보건, 발파 시 소음·진동도 2km 범위로 잡기 바람, 평가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근거나 타당성을 표나 도면상에 제시	○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시 대기질, 악취, 공중위생·보건, 발파 시 소음·진동도 등의 영향예측 범위를 2km로 확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위원	○ 스코핑 회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 왜 그런 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면 좋겠음	○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때 제시된 의견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음
대구한의대 권용일 위원	○ 포항시에 주거지가 및 산업단지 부지 부족여부 및 분양성 검토 또한 위치적으로 사업지구 지형이 산업단지 조성지 적정여부 및 남쪽 경계가 골짜기가 위치하여 경관적인 문제 검토 바람	○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시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수행토록 할 계획임
포항시 투자유치과 정연대 위원	○ 본 사업부지는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보다도 입지가 좋은 편으로 입지적으로 걱정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경사도가 완만함.	○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의 평균경사도는 약 15.57도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임
	○ 28번, 31번국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과 KTX 고속열차가 개통된 신평역사와 인접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됨	-

구분	심의의견	반영여부
<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의견</b>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위원	○ 업체선정과정에서 악취가 심한 업종종류를 정해놓고 미리 제외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음.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대구한의대 권용일 위원	○ 표고차 50미터 정도로 오염물질에만 집중하지 말고, 난개발을 억제 및 산지 절취부분에 대한 대안검토	○ 면적이 좀 크고 지형에 굴곡이 있어 농지와 레벨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몇십미터까지 차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시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 인구를 만 명으로 가정하면, 초등학교 연령의 인구비가 1%, 80명밖에 안되는데 초등학교가 있고, 또 중학교로 가려면 국도 등을 지나서 다녀야 하니 통학생에 대한 위험요소 검토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포항시의회 백강훈 위원	○ 오·폐수 부분에서 흥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증설이 따라야할 것이니 검토	○ 흥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5~2030년 까지 단계별 처리시설의 용량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포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2012. 3)
<b>3. 평가항목 및 범위 등</b>		
대구지방환경청 권영창 위원	<b>[평가항목 및 범위 등]</b> ○ 북쪽에 변전소가 있어 송전선로가 지나갈 확률이 있으므로 전파장해를 중점항목으로 검토	○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시 전파장해는 중점검토항목으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음
	<b>[평가항목별 조사(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등의 적정성]</b> ○ 동·식물상은 2~3계절 이상 조사하기 바람. 법정보호종이 한 종도 나오지 않았는데, 참고문헌 조사 시 전국자연환경조사(환경부)는 10년 단위로 조사되어 오래된 부분이 있으므로 근접한 평가지역의 최근 6년 이내 자료를 최소 4종 이상 활용하여 검토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작성토록 하겠음
	○ 수리·수문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북서쪽 이인저수지, 덕성지의 배수구역이 사업부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30년·100년 빈도를 조사하여 재해가 없도록 검토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작성토록 하겠음

구분	심의의견	반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 이인저수지, 남측 진입로 바로 아래 위치한 새갈지 등 저수지가 분포하는데, 사업시행 전에 사업부지에서 발생한 물이 농업용저수지로 유입될 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계획 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 잘 진행하다가 평가서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하여 잘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사전 검토하여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음</li> </ul>
<p>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위원</p>	<p><b>[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적정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이 중점항목에 빠져있는데, 토지이용 변화 측면에서 보면 중점사항이 아니지만, 각 항목별로 조사하고 조사예측결과를 반영 하는 토지이용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점항목으로 적용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토지이용 부분은 중점검토항목으로 적용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배치에 대한 사유를 각 항목에서 결과 표현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서의 토지이용과 초안 때 토지이용이 바뀐 사유가 설명되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될 것으로 생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주민설명회시 본 과업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을 중점항목으로 넣고, 각 항목과의 정합성을 주로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산업에 대하여 환경부나 KEI에서 의견이 나간 적이 거의 없으므로 주거·산업 항목은 과감히 제외 항목에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li> </ul>
	<p><b>[평가항목별 조사(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 등의 적정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항목의 경우, 인구변화가 어떻게 됐다는 조사를 주로 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의 경우 인구 만 명이 예상된다면, 만 명이 늘어남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기 바람. 유입인구 만 명이 늘어나면 초·중·고 학생, 중학생 증가와, 교통량과 교통체증, 대중교통 예측 등 인구증가로 인한 영향을 조사바라며, 인구항목도 중점항목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인구항목은 중점검토항목으로 선정토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항목은 외부에서 산업단지를 조망했을 때의 경관만 볼 것이 아니라, 건축고가 20층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 입주자 시점에서의 조망도 다루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겠음</li> </ul>	

구분	심의의견	반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에 택지개발이 공존하는 계획으로, 인근 지역 주민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입주할 입주민들도 중요하므로.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을 반드시 포함해서 민원발생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분야는 중점검토항목으로 본 사업에 따른 주변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민원 발생을 최소화토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 항목은 외부에서 산업단지를 전망했을 때의 경관만 볼 것이 아니라, 건축고가 20층이면, 입주자 시점에 조망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겠음</li> </ul>
영남대학교 사공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소음보다 발파시 소음이 민원이 훨씬 많으므로, 발파가 이루어진다면 발파소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분진은 PM-2.5를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반정지 공사시 발파공정이 수반될 경우 PM-2.5에 대한 영향을 예측토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고가 20층 정도면 지표에는 녹지가 조성되어 오히려 조용할 수 있으므로 지표 측정결과와 20층 측정결과가 다를 수 있음. 사람이 사는 쪽에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음</li> </ul>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김병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 평가시 포항시 기상자료, 부지 기상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주풍량이 어디인지 확보한 다음 영향평가지점을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측정중인 부지기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변정온시설을 선정하여 영향예측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li> </ul>
경제자유구역청 서만교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 현황 측정시 측정방법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변에 제시된 의견 반영토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 평가시 업종별로 발생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업종별 소음·진동 정도를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업종별 소음·진동을 고려하여 작성토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간이 2020년까지인데, 인근의 초곡·이인지구 등이 많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장 용량 초과부분을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지질에서 절·성토로 인한 토공발생 시, 이암층이 산성토양 성분으로 표토 제거시 빗물에 혼합되어 하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생태계 변화를 예측하여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li> </ul>

구분	심의의견	반영여부
<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의 적정성</b>		
포항시의회 백강훈 위원	○ 2008년 계획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민의견이 적용될 수 있는 건지?	○ 향후 합동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제시된 주민의견을 적극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작성토록 할 계획임
	○ 본 사업에 관하여 인터넷으로는 주민들이 잘 알 수 없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적극반영토록 하겠음
<b>5. 기타의견</b>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조공장 위원	○ 교통 안전대책에 대한 민원이 많으므로, 차량에 현수막 붙이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안전운전을 유도바람.	○ 향후 공사시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적극반영토록 하겠음
	○ 상당히 지체된 사업이므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초안 이후에 추가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동·식물상 등을 면밀한 조사 바람, KEI 홈페이지에 초안 검토 자료집을 활용하여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시 관련자료집을 적극활용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대구한의대 권용일 위원	○ 악취는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공장과 같이 입주하는 시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검토	○ 입주업체 선정시 악취 미발생 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를 유도토록 하여 주변에 미치는 악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토록 하겠음
영남대학교 사공준 위원	○ 아직 정확한 업종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업종이 정해져 버리면 대책이 없을 것임. 대부분 분쟁 원인이 악취, 분진 위주인데 이러한 업종이 들어오면 대책이 없음.	○ 입주업체 선정시 악취 및 분진 등의 환경오염물질 과다 배출 업체는 입주를 지향토록 하겠음
	○ 초등학교도 들어가는데, 이러한 공장이 들어올 시 방법이 없으므로, 업종이 들어올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업종을 선택.	○ 입주업체 선정시 환경적으로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유도토록 하겠음
포항시 투자유치과 정연대 위원	○ 포항시가 현재 포스코의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산업단지가 조성된 곳이 없어 준비된 공장용지가 부족한 만큼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단지 조성으로 용지공급 계획을 수립함

---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개최결과

구분	심의의견	반영여부
	○ 인근에 주거가 밀집된 곳이 많아 포함시는 기업유치에 공해발생 기업은 계획하지 않을 것 이며, 화학업종도 공해가 없는 업종만 유치하여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	○ 입주업체 선정시 좌변에 제시된 의견을 적극반영토록 하겠음